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「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」

◇ 제·개정 이유

- 가. 지식재산 경영인증 자문위원단 등 지식재산 전문가 개정 의견 반영
- 나. 「지식재산 제값주기 캠페인」 추진에 따른 개정 수요 반영

◇ 주요내용

- 가. (인증비용) 인증비용의 변경·공고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수입 활용 범위를 명시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
- 나. (신규인증기준) 지식재산 전담 부서·인력을 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 완화
- 다. (갱신인증기준) 지식재산 제값주기 문화 조성을 위해 인증 갱신 시 지식재산 서비스 비용 지출에 대해 가점 부여
- 라. (기타) 신규·갱신 인증서의 교부시점 통일 및 기타 오기 수정